

한의학대학 인사 내규

- 한의학대학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한의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한의학대학 교원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따라 한의학대학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원” 이라 한다)와 비전임교원, 강사로 구분한다.

① 전임교원은 교육부에 등록된 교수로서 정년교원을 의미한다. 전임교원의 분야는 해당 분야 교육과정 계획, 수행, 개선 활동을 담당한다. 교수자의 담당 과목 분야별 전문성은 학위, 전문의, 혹은 학위 및 전문의 취득에 준하는 3년 이상의 해당 분야 직무경력 등을 인정한다.

② 한의학대학은 인문학의 진흥을 위하여 정년교원과 비정년교원 중 언어, 언어학, 문학, 역사, 법률, 국제지역학, 문헌정보학, 심리학, 역사고고학, 인류학, 종교학, 철학, 윤리학 등을 담당할 인문학중점교원(연구중점·교육중점)을 둔다.

③ 정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고 비정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 비정년교원의 직급은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④ 비전임교원이라 함은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석좌교수, 특좌교수, 객원교수, 외래교수, 연구교수, 특임교수 및 산학협력중점비전임교수로 구분한다. 비전임교원의 채용 시에는 채용 분야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또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율이 최근 2년 비전임교원 전체 인원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임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교육, 연구, 봉사업적 외 산학연구, 산학교육, 산학지원 등의 산학협력만을 담당할 수 있다.

⑥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만을 담당할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은 정년교원(이하 “교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비정년교원, 산학협력중점비정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임용) 본 대학교 교원 임용은 학교법인 제한학원 정관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신규임용 하는 교수는 3년, 부교수 이하의 교원은 2년의 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한의학대학(원)은 교육과정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한의학 기초, 임상, 교육학 분야별 교수를 임용한다.

1. 임용분야

- 가. 한의학기초 분야 : 한방생리학, 한방병리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해부학, 예방의학, 원전학, 의사학, 한방진단학 분야별 1인 이상의 전임교수 필수 확보,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조직학, 미생물학, 면역학, 약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의학통계 등 분야의 전임교수 확보
- 나. 임상 분야 : 한방전문의 8개 과목(한방내과, 침구의학,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재활의학과)의 모든 분야에 전임교수(최소 14명의 한의학전문의) 확보
- 다. 교육학 분야 :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성을 가진 전임교원 확보

2. 분야별 책무

- 가. 한의학기초 분야 : 한의학 전공 학습을 위한 기초지식 습득, 인체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 질병에 대한 변증 능력 배양, 약물의 효능과 주치증 이해 및 처방 구성과 활용법 습득, 경락 경혈의 기능과 주치증 이해 및 침구 활용법 습득을 위한 역할
- 나. 의생명과학 분야 : 한의학기초 분야의 과학적 지식습득, 의학연구 방법론 습득 및 연구역량 배양, 인체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 질병발생의 원인과 기전 이해를 위한 역할
- 다. 임상 분야 : 증상에 따른 진단, 치료, 환자 교육 등의 방법 습득, 질환에 따른 주요 검사 방법과 결과에 대한 진료 적용 능력 배양, 의학 분야 논문을 통해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역할
- 라. 교육학 분야 : 도덕성 및 윤리의식의 함양, 인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과 약자에 대한 봉사정신 함양, 한의학의 철학적 배경 및 사고력 함양을 위한 역할

3. 근무기간

- 가. 교 수 : 정년까지(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나. 부 교 수 : 6년
- 다. 조 교 수 : 3년

4. 보수 : 본 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다.

5. 정원 : 본 대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계열별, 직위별 인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기간의 산정)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조에 따라 ①임용기간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임용기간 중 승진·전직·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정한다.

②교원의 임용기간이 학기도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임용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법인 제한학원 정관 제44조 제7호 및 제7호의2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한다.

제6조(교원인사위원회)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6조에 따라 ①교원의 임용·기타 교원인

사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제한학원 정관에 따른다.

제7조(결직금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①교원은 보수를 수반하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단, 창업의 경우에는 교원창업에관한규정에 따른다.

②교원이 다른 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 받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교원의 정년)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①본 대학교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②비정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비정년교원은 계약기간 중 만65세가 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만 65세가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을 정년으로 한다.

제9조(업적평가기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 교육업적·연구업적·산학협력업적·봉사업적의 평가기준은 본 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의한다.

제9조의2(교원업적심사위원회)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①교원의 승진, 정년보장, 재임용을 위한 업적의 심사와 연도별 교원의 업적 평가를 위하여 교원업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교원업적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10조(연구업적물 심사)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따라 ①연구업적물의 심사는 교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해당전공 분야의 3명(본교 1명, 타교 2명)의 위원으로부터 연구업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상위직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업적물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점수는 수(50점), 우(40점), 미(30점), 양(20점), 가(10점)으로 하고 평가 위원 3인의 평가를 평균한 점수로 한다.
2. 연구업적 평점은 각 편 공히 평균 “우” 이상이어야 하며, 석·박사학위 취득 논문, 국제적 및 전국규모 학술지 게재논문, 연구보고서, 연구비 수혜실적, 학술 발표, 특허 및 학술 관련 수상실적, 예체능계열의 실기업적물 중 배점이 100점 이상 항목은 심사를 생략하며, “수” 로 평가된 것으로 본다.

③연구업적물의 심사는 승진임용, 재임용에 적용하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 생략 항목이 승진임용, 재임용의 연구업적 기본요건에 미달 될 경우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대상물은 본인이 직접 선정한다.

제 2 장 신 규 임 용

제11조(임용시기)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1조에 따라 교원의 신규임용 시기는 3월 1일과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 채용의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교원의 자격) 본 대학교의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직위에 따른 신규임용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임상 및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실무업적이 탁월한 자는 각 임용 대상 직위의 교육 및 연구 경력 자격요건에 상응할 만한 실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직 위	연구업적	교육 및 연구경력
조 교 수	300점	박사학위 소지자
부 교 수	800점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교 수	1,300점	박사학위 취득 후 11년
단, 연구업적은 최근 4년 이내의 것이 2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연구경력의 계산)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①본 대학교 교원임용을 위한 교육 및 연구경력은 별표 1의 환산율 산출기준에 의한다.

②교육경력년수와 연구경력년수는 이를 통산할 수 있으나 부교수 및 교수는 원칙적으로 4년 및 6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③2개 이상의 기관에서 동시에 교육과 연구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중 한 기관에서의 경력년수만을 계산한다.

④연구업적의 평가항목은 논문, 저서, 특허, 산학협력연구활동 등으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본 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의거하되 분야별 채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연구업적은 최근 4년 이내 200점 이상이어야 하고, 연구업적의 기준은 분야별 전문성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⑤교육업적은 2개 학기 담당한 과목 수와 강의 시수로 평가하고, 교육활동 일반, 강의포트폴리오, 학생강의평가, 산학협력교육 활동 등을 참고한다. 봉사업적은 정부기관·공익단체 등에 자문과 학술 분야 활동, 산학협력 및 재정적 기여활동, 교내 보직 및 위원회 활동 등과 같은 교내봉사활동, 국제저명단체 표창, 국가·대학·기관·단체 학술상(국내·외) 등을 참고한다. 분야별 교육업적과 봉사업적은 추가적인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14조(임용 절차)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①교원인사위원회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최소 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신규임용 대상자를 심의한다.

1. 연구업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향후 대학교에서의 연구활동 계획
3. 학생의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의욕
4.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②신규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제15조(상위직 임용제한)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5조에 따라 특별한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교원, 대학조교, 대학행정 관리경력, 연구경력 이외의 일반직종 등의 경력만으로 부교수 이상의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제16조(타교경력자의 임용직위)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6조에 따라 ①타 4년제 대학교의 조교수 직위 이상의 경력자는 본 대학교에 동일한 직위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문대학의 교수 경력자는 부교수의 직위로, 부교수 경력자는 조교수의 직위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퇴직교원의 신규임용)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다시 교원으로 신규임용할 경우 퇴직 전 직급에서 승진 소요년수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퇴직전의 직급 이상의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제 3 장 승진 임 용

제18조(승진의 시기)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8조에 따라 ①승진의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승진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승진시기를 기준으로 승진이 유보된 교원의 경우 1년마다 승진기회가 주어진다.

제19조(승진의 최소요건)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9조에 따라 ①본 대학교 교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21조에 규정한 승진소요연수에 다음의 업적별 승진 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업적의 점수와 산학협력업적의 점수는 상호 대체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트랙 교원은 업적별 승진 최소요건 중 산학협력업적의 점수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승진직위	심사대상기간	대상자	업적별 승진 최소요건			
			교육업적	연구업적	산학협력업적	봉사업적
부교수 및 교수	최근 6년	조교수 및 부교수	700점	450점	150점	200점

②승진을 위한 심사는 승진심사 대상 기간 동안의 완료된 교육업적(마지막 학기 점수 제외), 연구업적(승진 기준일 이전에 게재, 출판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업적 포함), 봉사업적을 대상으로 하며, 업적별 승진 최소요건 외 동 규정 제20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교원업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교수로의 승진은 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승진요건 외에 정년보장심사규정에 의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교원은 직위별 승진에 따른 연구·산학협력영역 업적 중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전국규모학술지 게재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전문학술저서(학술원 선정 우수도서급), 국제특허, 국내특허, 신기술·제품인증, 기술이전금액(100점이상), 정부기관 연구비(100점 이상), 산업체 연구비(100점 이상), 국책지원사업 및 산학협력사업유치 실

적의 점수가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계열구분	승진직위	부교수	교수
	기초 및 교육학 계열	300점	360점
	임상 계열	150점	180점

제20조(임용절차)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0조에 따라 ①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승진임용 대상자를 심의한다.

1. 연구업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②승진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제21조(승진 소요연수)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1조에 따라 본 대학교 교원 승진에는 다음과 같은 소요연수를 필요로 한다.

직 급	승진직위	소 요 연 수
조 교수	부 교수	6년
부 교수	교 수	6년

제21조의2(특별승진)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1조의 2에 따라 ①교원업적과 교육 및 직무에 탁월한 교원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교수, 부교수는 각각 3년이 경과된 후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산학협력실적이 탁월한 교원은 3년이 경과된 후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2조(승진 소요연수의 산정)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2조에 따라 ①본 대학교 교원으로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해외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연수기간의 기간은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 할 수 있다.

②해외 유학의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3년까지를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 할 수 있다.

③타교 경력은 4년제 대학은 본교 신규임용 직급 이상의 경력에 대하여 100%를, 대학은 본교 신규임용 직급보다 바로 위 직급 이상의 경력에 대하여 80%를 인정할 수 있다.

④승진임용을 위해 타교 경력을 산입할 때에는 산입 후 총 경력이 승진소요연수보다 6월을 초과하고, 본 교 실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승진 대상자로 한다.

⑤현 직급에서 정관 제44조제5호(해외유학 또는 해외연구 목적)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사실이 있는 교원은 당해 직급 실제근무기간이 조교수·부교수는 2년 이상이어야 해외 휴직기간을 승진연수에 산입 할 수 있다.

⑥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중인 자가 승진 대상이 될 때에는 승진예정일 2개월 전에 귀국하여 승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 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3. 계열별, 직위별 비율에 초과된 경우 <신설 '09.10.01.>

②교직원복무규정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주 4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별 최소 승진 소요기간의 1.5배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임 용

제24조(재임용의 시기)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재임용의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년 2회로 한다.

제25조(재임용 대상자)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조에 따라 직위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한다.

제25조의2(재임용 절차)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5조의 2에 따라 ①임용권자는 재임용 후보자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원인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재임용의 최소요건)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6조에 따라 ①본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서는 다음의 재임용 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교원업적심사위원회의 교원임용 종합평정 점수 6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업적의 점수와 산학협력업적의 점수는 상호 대체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트랙 교원은 업적별 재임용 최소요건 중 산학협력업적의 점수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직위	심사대상 기간	업적별 재임용 최소요건			
		교육업적	연구업적	산학협력업적	봉사업적
조교수	최근 3년	300점	150점	75점	75점
부교수	최근 6년	600점	300점	150점	150점

②재임용을 위한 심사는 각 직위별 심사대상 기간 동안의 완료된 교육업적(마지막 학기 점수 제외), 연구업적(승진 기준일 이전에 게재, 출판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업적 포함), 봉사업적을 대상으로 하며, 업적별 재임용 최소요건 외 동 규정 제27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교원업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임용절차)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7조에 따라 ①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재임용 대상자를 심의한다.

1. 연구업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②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제 5 장 정년 보장 임 용

제28조(임용대상)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8조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대상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연구업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제29조(정수)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9조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총 재직 정년트랙 전임교원수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임용절차)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0조에 따라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절차는 정년보장교원심사규정에 의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31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①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32조(적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 교원관련 법규·인사지침 및 학교법인 제한학원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